

---

# 기술료 제도 매뉴얼

[2021. 1. 1. 이후 협약과제 대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법 제정에 따른 기술료 제도 매뉴얼(21.6)」을 준용하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2021.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목 차

I. 기술료 제도의 개요 .....	1
1. 정 의 .....	1
2. 목 적 .....	1
3. 근 거 .....	1
II. 기술료 제도의 운영 .....	2
1. 운영체제 .....	3
2. 기술료 징수 .....	3
3. 정부납부기술료 .....	3
4. 기술료 등 감면 .....	4
5. 기술료 사용 .....	4
III.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기준 .....	5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5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	5
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 .....	5
4.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 .....	6
5.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6
6.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수단 .....	6
<붙임>	
1. 정률기술료 산정 및 검증 가이드 라인 .....	7
2. 코로나-19 기술료 유예 가이드 라인 .....	9
3.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관련 서식 .....	10

# I. 기술료 제도의 개요

## 1. 정 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 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2. 목 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 연구개발성과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원 보상

## 3. 근 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Ⅱ. 기술료 제도의 운영

### 1. 운영체제

○ 기술료 제도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①기술료의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②기술료 등의 납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③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

< 기술료제도 운영체제 >



## 2. 기술료 징수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를 허락한 경우,
-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

## 3. 정부납부기술료

###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 ①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율 5%(중소기업), 10%(중견기업)를 곱하여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로 함

$$\text{정부납부기술료(직접실시)} = \text{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times \text{기술기여도} ** \\ (\text{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times \text{요율} ***$$

\* 수익 : 연구개발성과 실시 이후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액(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

\*\* 기술기여도 :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도(협약 시 정한 매출액 기여비율)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과제종료 후 정산을 통한 정부지원연구개발 실사용 비율) 곱하여 산정한 비율

\*\*\* 요율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 ②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5% (중소기업), 10%(중견기업)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로 함

$$\text{정부납부기술료(제3자실시)} = \text{기술료 징수액} * \times \text{요율} **$$

\* 기술료 징수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 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

\*\* 요율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 4. 기술료 등(징수액 또는 납부액) 감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은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등에 대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 5. 기술료 사용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등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 등에 사용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분기술료)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 및 사용 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 보상금 : 정부지분기술료의 50%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 정부지분기술료의 15% 이상
-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정부지분기술료의 10% 이상
- 연구개발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 나머지 금액

### Ⅲ.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기준

####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정부납부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처가 기업 유형에 따라 하기와 같이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간

-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납부

## 4.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

-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현저한 경영 악화 등으로 기업 신용도 조사 또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유예
- 사업재편계획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이거나,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유예
- 청년고용 기술료 유예제도(한시적, '18년~'22년), 코로나 기술료 유예제도(한시적, '20년~'24년) 운영

## 5.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국가안보, 사회적 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 악화 등 감면 조건에 해당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6.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수단

-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기여도를 연구개발과제협약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약 단계에서 논의를 위한 ‘매출액 기준’ 및 ‘기술기여도’ 등에 대한 산정과 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실시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 징수 기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과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기술료율’ 에 따라 다음의 기준과 절차로 기술료를 징수함

기술료 징수금액 =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매출액 기여도(협약 시 정한 비율)	(협약내용)
	×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정산 후 확정 비율)	(규정내용)
	× ④ 기술료율	(규정내용)

**□ 산식 기준**

1.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은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기업이 작성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조정계산 항목 중 ⑥조정 후 수입금액을 적용
  - 다만, 기업매출 중 상당부분이 상품매출, 임대 등 제품외 매출인 경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의 증빙을 통하여 제품매출 반영가능

## 2. 매출액 기여도(협약 시 약정한 매출 기여비율)

- 기업이 과제 신청 시 제시하고, 협약 시 체결한 연차별 매출액 기여도를 기준으로 적용

가. 과제 신청 시 제출(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 (A)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 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B)						
	매출액기여도 (C=(B/A)*100)						

나. 협약 체결 시(협약서 제16조 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구 분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매출액 기여도					

다. 상기 산식에 따라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음

##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과제종료 후 정산을 통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실 사용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 연구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적용

<p><b>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b> = <math>\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 연구비}^{**}}</math></p> <p>(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p>*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 투입금액) : 총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 - 총 정산 환수금</p> <p>** 총 연구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민간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p>
--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출한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를 자체 또는 외부 회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를 확정함**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 납부의무기관)이  
 코로나-19 피해·확산으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유예 받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20.4)」

**□ 개념**

-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피해·확산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시기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제도

**□ 유예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 기술료 납부의무기관
  - \* 시행기간 : 코로나-19 특별지침 제정고시일(20.4.17)부터 '24.12.31까지 한시적 시행
- (신청 자격) 제정고시일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예정기업 또는 기술료 납부 중인 기업
  - \* 기술료 미납 및 기술실시 미체결로 인한 제재조치 대상기업, 법원 회생인과 및 파산 면책 중인 기업 등 제외
-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대상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신청방식 : SMTECH(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운영 중
  - \*\* 신청서류 : 유예 신청기간(1년 또는 2년) 및 유예 사유(①고객감소, ②내수감소, ③수출 감소, ④직원감소, ⑤확진자(우려) 선택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 예를 들어 기술료 납부예정일('20.10.01) 경우, 2년 유예 신청 시 '22.10.01 납부 유예

**붙임 3**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직접실시)]

<u>기술실시 결과보고서</u>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기여도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대기업·공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정부지원금 40%해당액)									
기술실시 유형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input type="checkbox"/>			결산 년월		0000년 00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input type="checkbox"/>	기술기여도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협약	00%	00%	00%	00%	00%	00%	00%
			최종	00%	00%	00%	00%	00%	00%	00%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R&D성과 수익금액 × 기술기여도 × 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당기 회계기간		'00.00.00 ~ '00.00.00								
① R&D성과 수익금액										원
② 최종 기술기여도		매출액 기여도(협약 시 약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과제종료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실사용금액)								
③ 요율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①×②×③ 예상 납부대상액										원
④ 감면금액	<input type="checkbox"/>	국가안보 관련 <input type="checkbox"/>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input type="checkbox"/>	경영악화 감면 <input type="checkbox"/>	청년고용 감면 <input type="checkbox"/>	기타조건 감면 <input type="checkbox"/>				
		원	원	원	원	원	원			
①×②×③-④ 결정금액		※ 결정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 입력								원
<p>1.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2.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년 월 일</p> <p>(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p>										
첨부서류 : R&D성과 세부사양 및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자료 각 1부										

##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기술기여도: 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1) 협약: 과제 신청 시 제시하고, 협약 시 체결한 연차별 매출액 기여도를 기재합니다.
  - 2) 최종: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도(협약)와 과제종료 후 정산을 통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를 곱하여 기술기여도를 기재합니다.
  - 3) R&D성과 수입금액: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중 조정후 수입금액을 기재하며,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 4) 최종 기술기여도: 해당되는 회차의 기술기여도(최종)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의 1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28> (앞 쪽)

사업 연도	~	<b>수입금액조정명세서</b>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정 과 목		③ 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 조정후 수입금액 (③ + ④ - ⑤)	비 고
① 항목	② 과 목		④ 가 산	⑤ 차 감		
계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 공사명	⑧ 도급자	⑨ 도급금액	작업진행률계산			⑬ 누적익금 산입액 (⑨ × ⑫)	⑭ 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⑮ 당기회 사수입 계상액	⑯ 조정액 (⑬ - ⑭ - ⑮)
			⑩ 해당사업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작업시간 등)	⑪ 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 등)	⑫ 진행률 (⑩/⑪)				
계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계정 과 목		⑰ 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⑳ 당기 회사수입금 액 계상액	㉑ 조정액 (⑰ - ⑳)	㉒ 근거법령
㉓ 항목	㉔ 과 목				
계					

**다. 기타 수입금액**

㉕ 구 분	㉖ 근거법령	㉗ 수입금액	㉘ 대응원가	비 고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가. 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매출에누리과 환입액 및 매출할인액을 빼서 적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 중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⑬조정액 계 및 ⑭조정액 계와 ⑮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⑮조정차감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⑬조정액 계 및 ⑭조정액 계와 ⑮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적고, ⑩란의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건설의 경우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과 ⑮란의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을 뺀 금액인 ⑬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다.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회사 결산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라. '다.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나" 외의 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⑮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탁판매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⑮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⑯대응원가란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대응원가를 적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3. ④조정가산란의 계와 ⑤조정차감란의 계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⑬조정액 계, ⑭조정액 계와 ⑮수입금액란의 계를 합계한 금액이 ④조정가산란의 계에서 ⑤조정차감란 계를 뺀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⑥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⑩합계의 ④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